**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개요 및 현황**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단체로, 검찰개혁 정책의 일부로 추진되어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수처 혹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사처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및 주장해왔었고 이러한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와 거대여당의 주도로 2021년 1월 21일에 설립되었다. 공수처의 표면적인 설립 취지는 권력형 비리 척결이지만, 검찰의 특수부나 특수검사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ㆍ기소 기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지대한 요소임을 증명해준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공수처 설립 이전까지 기소독점주의를 통한 거대권력 단체로 성장하였고 이에 따른 검찰의 부패 문제가 염려되어왔다. 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출범된지 약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만큼, 설립 이후 진행되었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분석과 공수처의 구조 분석을 통해 공수처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첫째, 공수처가 대한민국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번째로 공수처의 존재와 목적이 검찰개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설치 근거로 하고 있고, 국회의원, 판사, 검사, 장차관급 공무원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등을 비롯한 각종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검찰 및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 및 설립된 만큼,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구속받지 않고 판사, 검사, 경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사에 대한 기소권한을 가지게 된다. 고위공직자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단체이기에 기관의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공수처의 기관장인 공수처장은 여야 인사가 혼합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위원회의 ⅔ 즉 5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인으로 발탁되며, 총 2명의 추천인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이렇듯 법률상으로는 야당 추천인원을 포함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지만, 야당 추천인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그외 인원이 모두 동의를 할 경우 추천인으로 발탁이 되기에 완전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구조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의 실질적인 최종적인 임명은 행정부에 의해 이뤄지기에 집권여당에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또한 공수처의 정당성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서 기인하지 않기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독립적 기구로서의 적합성을 분석해야 한다. 해당 적합성은 검찰개혁이 내부적 수정이 아닌 외부적 개입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와 공수처가 독립적 기구로서 정당한 외부적 개입을 통해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허나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 보유로 인해 발생한 검찰의 부패가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는 상위 권력기관의 탄생으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출범 이후 진행된 수사와 기소 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공수처는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는 공수처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위헌성, 적합성, 필요성을 분석하여 권력형 비리척결과 검찰개혁을 진행하는데 있어 공수처가 적합하지 못한 수단임을 증명할 것이다. 또한, 공수처의 한계점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중립성과 통제 수단의 부재를 통해 새로운 부패 권력 기구로 변질될 가능성 또한 기술할 것이다.

**헌법 원칙 위배 (적법성 논의)**

1. **헌법상 근거의 부재**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한 최근 헌법소원(2020헌마264, 2020헌마681)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5명), 위헌(3명), 각하(1명)의 의견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은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이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대(위헌)의견을 냈다. 검찰의 경우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 32조 제3항에 따라 검찰청법에 의해 설치되고 있다. 공수처는 특별수사기구임에도 헌법 상 근거가 없다. 특히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검사가 가지는 수사권과 공소권은 국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일원적인 권력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원적(始原的) 행정행위로서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행정영역"이라며 "그럼에도 공수처법은 검사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한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일부를 분리해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수사처에 부여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검찰총장임명은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사기관 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

1. **공수처 검사 권한의 위헌성 문제 (영장주의원칙 위반)**

우리 헌법은 제 12조에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 오로지 '검사'만이 영장을 법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소속 수사관들은 검사와 같은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인데,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 주체로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에 대한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인만큼, 헌법상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헌법 제16조 주거에 대한 압수 수색을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수처 검사가 헌법상 검사로 볼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 검사가 단지 검사라는 명칭으로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 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1.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또한,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공수처는 수사 기소권을 행사하는 형사사법기관이지만 그 성격상 침해적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행정부 속의 집행기관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소속이어야 함에도 별도의 독립기구로 두는 것은 독립성의 측면에서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침익적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상 별도의 독립기관성 부여는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둘 경우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반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둘 경우에는 공수처가 정치성을 띨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모호한 정체성은 근본적인 문제이며, 공수처가 ‘옥상옥’ 기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이는 기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1. **통제 수단의 부재**

만약,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일 경우 기존 검찰과는 달리 탄핵 외에 전혀 통제수단이 없으며, 수사진행과정에서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요 고위공직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초헌법적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상대 수사기관은 여기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수사처는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 즉, 이는 수사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영장주의원칙 위반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1. **평등의 원칙 위반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권력분립 외에 평등원칙 위반의 견해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무담임권을 갖는 국민이 고위공직자가 되었다고 일반국민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하여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법 앞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공직자가 일반국민보다 중하게 처벌받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법적 책임을 지는 )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는 차별이다.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고위공직자와를 비고위공직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은 장기간 점하는 사회적 지위로서 특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즉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비율이 비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다거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권한행사가 불공정하다는 실증적 자료가 없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특정 범위의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기관이 설립된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이해충돌 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판사 등을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동일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수사 및 공소권 행사에서의 차별취급, 퇴직시기와 관련된 경과규정의 미비,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관할 규정등은 이러한 차별취급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차별취급을 받은 고위공직자 및 퇴직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칠 정도이며, 이러한 수준의 차별취급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적당하다고도 보기 어려워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적법절차 원칙 위반**

수사처장 이첩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첩 요청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그에 대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첩 여부가 수사처장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맡겨진다. 또한, 사건이 수사처로 이첩될 때 피의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피의자 등은 이첩 자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다. 만약 주소 등이 수사처 소재지가 아닌 경우,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거나 입증자료 제출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특히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사건을 이첩할 경우 이첩에 따른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않는데, 이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신구속에 관한 사항조차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1.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수사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판사 및 검사가 약 5,000명에 이르고, 판사와 검사에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매년 3,000여 건에 이르며, 수사처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중에는 형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와 같은 법관의 재판 업무 자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범죄도 포함되어 있어 자칫 수사처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하여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내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 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나아가 재판 당사자가 가지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설립 타당성 논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견제 기관으로 출범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향성 및 미래상 설정 부족으로, 공수처는 단순히 검찰이 쥔 패를 똑같이 들고 있을 뿐 검찰 개혁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지키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공수처의 설립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옥상옥’이다. 공수처 설립 이전 검찰 개혁을 요하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에는 검찰이 수사지휘 권한을 바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며 일명 “제식구 감싸기”를 시전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만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언제든 수사중인 사건을 중단시킬 수 있는 구조기에, 수사를 통해 검찰 내부의 비리를 적발하는 데 취약하다는 것이 여러 뇌물수수 사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게 하여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자는 것이 시민단체나 학계가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던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다. 그런데 기존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검찰이 가지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단순히 공수처로 이양한 것은 검찰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계승한 옥상옥에 불과하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이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상 설정이 부재한 탓에 검찰 견제라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가 상급기관인지에 대한 유치한 권한 다툼과 논쟁만 횡횅하는 것이다. 그 예로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를 들 수 있다. 공수처가 처벌 필요성이 있다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경우, 검찰은 경찰에 하듯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검사 신분이기 때문에 보완 수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공수처가 견제라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만큼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의미없는 대립만 지속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태다.

더욱이 공수처의 권한 이양 및 체계는 검찰 견제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형태로, 여러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되려 더 많은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 및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검찰이 정치권력화 되었고 독립성 및 중립성이 훼손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면, 같은 구조와 권환을 손에 쥔 공수처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삼권분립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권력구조라는 비판 속에서 세워진 기관인 만큼 공수처 또한 권력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후 공수처를 견제할 방안을 또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직 비리를 성역 없이 척결하기 위함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이번 정권의 주장과는 다르게, 공직 비리를 담당하는 검찰 특수부는 되려 축소하는 것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모순점들과, 이 정권의 공수처법이 적용대상을 단순히 고위공직자 재직자 또는 가족의 범죄로만 정의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만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 정권이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전현직 고위공직자들과 관련 인사들을 보복 및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미래상 설정 및 검찰 개혁 세부화 준비 부족의 여파로 현재 공수처가 설립된 이후에도 건강한 견제를 통한 발전은 없고 갈등은 평행선을 달린다. 검찰과 공수처 각각 스스로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내부 예규를 만드는가 하면 서로의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공수처 설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률 공백 지대는 차후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공수처 설립의 근본적 정당성과 타당성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두 기관의 지속적인 합리적 권한 조정 불발과 어정쩡한 관계는 형사 사법 체제의 틀을 흔들 것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와 중립성 보장의 어려움 및 견제장치와 체계성의 부재**

공수처는 근본적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및 정치권력 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다. 공수처 설립의 목적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자 함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 사정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출범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늑장 지적이나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 ‘고발 사주’에 대한 의혹 등 정치계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에 끊임없이 연루되었다. 더해 공수처장의 최종적인 임명권또한 이미 집권 여당에게 있는데, 이는 이미 공수처의 권력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 또한 한 정당에게 존재한다는 말이며 결국 한 정당에게 유리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 물론 후보 선정은 한 정당이 아닌,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그리고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이루어진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맡으나, 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후보 2명을 선정하면 이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물론 위원회 7명 중 각 정당 추천 위원은 2명 씩이라는 점에서 중립성이 담보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집권 여당의 입김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게 되는 법무부장관과 여당 위원 2명은 집권 여당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 더해 법원행정처장, 즉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지위이므로 집권 여당의 간섭이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집권 여당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다수 존재한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7명 중 여당 위원이 2명, 집권 여당의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큰 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 위원 2명은 야당이 둘 이상이므로 거부권이 제1야당과 제2야당에게 각각 한 표씩만 주어질 것이다. 결국 7명 중 야당 위원 2명은 집권 여당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며,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2명은 집권 여당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므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야당의 입장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저지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후보 2명 중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에 공수처장의, 나아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의 부족 문제로 이어진다.

공수처장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공수처법은 신생 법률이기 때문에 체계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 중 기소할 수 있는 지위가 국한되어있는데, 이는 기소 가능한 공직자와 기소 불가능한 공직자가 함께 연루된 사건을 기소하는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재 공무원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본래 공직자 부패 수사를 목적으로한 공수처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까지 포함하여 기소권을 가진다면 불명확한 공무원 직무범위 기준으로 인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지며 수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는 불필요한 수사 과정까지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립성 보장의 어려움, 견제장치의 부재, 그리고 체계성의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다른 사정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 및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기본권 보호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 7,000여명 외에 관련자까지 포함하면 결국 다수 국민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개연성이 있다.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을 받는 공수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괴물로 돌변할 위험성이 높다. 이제라도 공수처법을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기 집권을 위해 과욕을 부리다가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공직 비리는 상당 부분 민간 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나갈 기회만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불명확한 기준과 체계성의 부족, 그리고 견제장치의 부재는 결국 보복수사나 표적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재 공수처는 공수처 고위 간부들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불필요하게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하며 보복 수사 및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